

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40일
신청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	
	팩스번호	전자우편 주소	
	대표자 주소		
	사무소 소재지		
	검정 분야		
	업무 개시일		

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상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 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	수수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없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
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
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